#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13 발의연월일: 2025. 2. 5.

발 의 자: 안상훈·박준태·김소희

박덕흠 • 박정훈 • 김기현

이성권 • 유용원 • 박상웅

박성훈 • 백종헌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 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음.

이에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 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 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 중 "분야별로"를 "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
- 2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1조의2(수급추계위원회) 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(이하 "수급추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・치과의사・한의사
  - 2. 「간호법」 제4조에 따른 간호사
  - 3. 「약사법」 제3조에 따른 약사 및 제4조에 따른 한약사
  - 4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의료기사
 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
  -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추계

- 2.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추계
- 3.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 이에 따른 수급 추계
-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단위 수급추계,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제6항제1호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.
-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들은 타 단체 가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 전문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, 보건복지 부장관은 각 단체로부터 전체 위원에 대한 동의를 득한 뒤에 위촉 을 하여야 한다.
- 1.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 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「의료법」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가 추천하는 전문가
- 2.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, 소비자·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

- 3. 보건의료 관련 학회, 경제학회, 통계학회,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 하는 전문가
- ⑦ 제6항의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,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위촉한다.
- ⑧ 제6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- 1. 경제학・보건학・통계학・인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
- 2.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
- 3. 대학의 부교수,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
- ⑨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① 그 밖에 수급추계 주기, 수급추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3(수급추계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 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(이하 "수급추계센터"라 한다)로 지 정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

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
-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1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, 제2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.

제2조(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) 보건복지부장 관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

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제3조(「간호법」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)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개 정규정은 2025년 6월 20일까지는 "「의료법」 제7조에 따른 간호사" 로 본다.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 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,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 ----- 다음 각 호의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1.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 원회 ⑤ (생략) (5)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21조의2(수급추계위원회) ① 보 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 (이하 "수급추계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 1.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 사 · 치과의사 · 한의사

- 2. 「간호법」 제4조에 따른 간

   호사
- 3. 「약사법」 제3조에 따른 약 사 및 제4조에 따른 한약사
- 4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따른 의료기사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
-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추계
- 2.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추계
- 3.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 이 있는 직종으로써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 이 에 따른 수급 추계
-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지 역 단위 수급추계,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 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 ④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

-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제6항 제1호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.
- ⑤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은제6항제3호의위원중에서위원회에서호선으로결정한다.
-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 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들은 타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 전문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단체로부터 전체 위원에 대한 동의를 득한 뒤에 위촉을하여야 한다.
- 1.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「의료법」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 가
- 2.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, 소비자·환

- 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 천하는 전문가
- 3. 보건의료 관련 학회, 경제학

   회, 통계학회, 연구기관 등에

   서 추천하는 전문가
- ① 제6항의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,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모든 직종별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위촉한다.
- ⑧ 제6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한다.
- 1. 경제학・보건학・통계학・인

   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

   <u>자</u>
- 2.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 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
- 3. 대학의 부교수, 연구기관의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
- ⑨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

<신 설>

제2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수 있다.

① 그 밖에 수급추계 주기, 수 급추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3(수급추계센터)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 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 인력수급추계센터(이하 "수급 추계센터"라 한다)로 지정・운 영할 수 있다.
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(위원회의 기능) <u>①</u>
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
	당하는 보건의료인력별 양성
	<u>규모</u>
5. (생략)	<u>6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
	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1조의2
	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추
	계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